(재)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-20호

- 전략산업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 -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통합공고

(재)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라북도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소재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, 업그레이드, 과제기획을 지원하고자『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2022년 02월 24일 (재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01 ~ 2022. 12

○ 지원규모 : 68,000천원

○ 지원내용

구 분	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	②기업부설연구소업그레이드 지원	③ 응복합 R&D과제 기획 지원
개요	도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및 재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	도내 중소기업의 기업연구소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기자재 교체 및 기술정보활동비 지원	도내 중소기업의 R&D과제 기획 및 과제화 추진을 위한 지원
공고 기간	'22.2.24(목) ~	'22.2.24(목) ~ '22.3.21(월)	
접수 기간	수시접수 (사업비 지원 가능 시까지)	'22.2.24(목) ~ '22.3.21(월) 16:00까지	
지원금액 (과제당)	600천원 이내	3,000천원 이내	7,000천원 이내 (지원금의 10% 자부담)
세압간	-	-	2022. 4. 1 ~ 2022. 8. 31 (5개월 이내)

[※] 상기 지원규모 및 내용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
2 지원사업 내용

I.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

- 지원내용 :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(600천원/건)
 -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 전문가 3회 이상 컨설팅
 -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경영, 회계 컨설팅 등
- 신청대상
 - 국내외 중소기업 중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또는 기보유

7	나 분	대 상
커	신규설립	•2022년 1월 1일 이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취득 기업
설	재 설 립	•기업부설연구소 자격 상실 후 2022년 1월 1일 이후 기업부 설연구소 설립 인증을 취득 한 기업
팅	**	※ 단, 본 사업 수혜 이력 기업은 3년이 경과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을 취득한 기업

- ※ 도내 기업이 타 시도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지원불가
- 지원요건
 - 1)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원
 - 컨설턴트와 컨설팅 3회 이상 수행 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
 - 법인 지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 수료(교육과정은 신청서 붙임 자료 참고)
- 추진절차 및 내용

추진절차	추진내용	비고
사업설명 및 사업공고	•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•사업설명 및 상담(063-260-9335)	전북TP
+		
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취득	•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을 통한 인증 취득	신청기업/ 컨설턴트
↓		
지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	 법인 지정 온라인 동영상 필수교육 수료증 제출 인정서, 회원증,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우편접수 또는 E-mail 접수 ※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접수 요망 	신청기업
↓		
지원기업 선정	•인정서, 회원증, 결과보고서 등 완료결과 검증(서면평가)	전북TP
사업비 지급	•지원여부 검토 후 사업비 지급	전북TP
사후관리	•사업성과 모니터링 (R&D수주, 고용, 연구소활성화 등)	선정기업

- 사업비 지급
 -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 후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시 지급(신청서 및 필수서류 : 지정양식 참고)

ш. 기업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지원사업

- 지원내용
 -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기자재 교체, 기술정보활동비 등 지원
 - ·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필요 요소(연구기자재*, 서적 등)
 - *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활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, 시제품 제작설비,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 전용 연구기자재만 가능(사무비품, 범용기자재는 포함되지 않음)
- 신청자격
 - 접수마감일 현재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
- 추진절차 및 내용

추진절차	추진내용	비고
사업공고	•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	전북TP
1		
신청서 접수	•R&D종합정보시스템 접수 (신청서 및 제반서류)	신청기업
1		
선정심의	•지원대상 자격요건 확인 및 검토 (NTIS, R&D종합정보시스템 활용) •선정평가위원회 개최 (서면평가)	전북TP
1		
협약체결	•선정결과 통보 후 2주 이내	TP-기업
↓		
사업비 지급	•협약체결 후 소요비용 지급	전북TP
↓		
사후관리	•수혜기업 모니터링	선정기업

※ 상기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○ 평가항목

구 분	평가지표	배 점
	기업 기술개발 투자 및 여건	20
기업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지원	업그레이드 필요성	30
	사업계획 적정성	20
	기대효과	20
	활용계획	10
	100	

- 사업비 지급
 -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협약체결 후 소요비용 지급

Ⅲ. 융복합 R&D과제 기획 지원

- 지원내용
 -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R&D 과제 기획보고서 작성 지원
 -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기술교류 등 제반 활동 지원
 - ·기획과제 관련 기술세미나 강사료/자문회의 기획위원 자문료
 -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비(회의비) 등
 - ▶ 선정기업은 기획보고서 1건 이상 제출 필수
- 신청자격

신청자격 및 지원요건

- 지원대상
 - (주관기관)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
- (참여기관) 도내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, 도내외 대학, 연구소 전문가
- 신청요건
- 산·학·연 컨소시엄 R&BD모임을 구성하여 신청(구성인원 : 5 ~ 8명)
 - □ 대학, 연구소 소속 : 2명 이상
 - ① 주관, 참여기업은 도내 기업 필수, 대학과 연구소는 도외 참여 가능
 - ② 주관기업 참여인력은 내부인력, 그 외 전문가 풀로 구성
- 지원요건
- 선정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(발표평가) ※ 코로나19로 인하여 평가방식 변경 가능
- (목표) 결과보고서, R&D과제 기획보고서, R&D과제 공모접수(1억 이상), 세미나 개최 등(신청서 참조)

○ 추진절차

추진절차	추진내용	비고
사업공고	•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	전북TP
1		
신청서 접수	•R&D종합정보시스템 접수 (신청서 및 제반서류)	신청기업
+		
선정심의	•지원대상 자격요건 확인 및 중복지원 검토 (NTIS, R&D종합정보시스템 활용) •선정평가위원회 개최 (대면평가)	전북TP
1		
협약체결	•선정결과 통보 후 2주 이내	TP-기업
1		
사업비 지급	•협약체결 후 2주 내 사업비 지급	전북TP
+		
진도점검	•과제추진 현황 및 사업비 사용 적정성 중간점검	전북TP
1		
결과보고	•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•관련 증빙서류 제출	선정기업
1		
사후관리	•사업성과 제출 (R&D과제 수주 성과 등)	선정기업

※ 상기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○ 평가항목

구 분	평가지표	배 점
	R&D 과제 구성(조직) 현황	10
	R&D 과제 수행 목적	20
기업부설연구소	R&D 과제 활동계획	20
R&D과제기획 지원	R&D 과제 성과 도출 방안	20
	R&D 과제 기대효과	20
	예산 집행 계획	10
합계		100

○ 사업비 지급

-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급
- · 사업비는 주관기업에서 일괄 관리 후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

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구 분	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	② 기업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지원	③ 응복 합 R&D과제 기획 지원
공고 기간	'22.2.24(목) ~	'22.2.24(목) ~ '22.3.21(월)	
접수 기간	수시접수 (사업비 지원 가능 시까지)	'22.2.24(목) ~ '22.3.21(월) 16:00까지	
신청 방법	지원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(지정양식 붙임참조)		
접수 방법	우편접수 또는 E-mail 접수 (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접수 요망)	R&D종합정보시스템(https://rnd.jbtp.or.kr) 접수	
접수처	주소 :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24 연구동 3층 R&D지원팀 메일 : thdxody@jbtp.or.kr		
기타 사항	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		
관련 문의	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진흥단 R&D지원팀 송태요 주임연구원(☎063-260-9335)		

4 유의사항

○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(2020.1.1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,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(공공재정지급금)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

* 재제부가금

- 허위청구 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받은 지원금의 5배
- 과다청구 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(받은 지원금 -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
- 목적 외 사용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 :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